



금융상품의 분류와 보험 관련 이슈

: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적용대상

양승현 연구위원

- 내년 초 시행을 앞둔 금융소비자보호법은 현재 권역별로 달리 규제하는 금융상품을 보장성, 투자성, 예금성, 대출성의 4유형으로 재분류해 동일 유형의 금융상품에는 동일 규제를 적용함
 - ‘금융상품’에는 기본적으로 권역별 법령에서 정한 금융상품(예금, 대출, 투자상품, 보험상품, 신용카드 등)이 해당되며, 그 밖에 그와 유사한 상품에 대해서는 시행령으로 정하여 추가할 수 있음
- 보험상품은 보장성상품에 속하며, 그 밖에 보험상품성 여부가 논의되어 왔던 유사 서비스 내지 상품의 보장성상품 포함 여부에 귀추가 주목됨
- 채무면제·유예계약은 보험상품의 개념요소(위험보장성, 피보험이익, 우연성)를 갖추었으나 신용카드사의 부수업무로 영위되는 상품으로 보험상품성에 대한 논란이 있어 왔음
 - 이를 ‘금융상품’에 포함해 보험상품과 동등한 판매규제를 적용하면 규제 현실은 존중하면서도 소비자보호 수단은 강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임
- 특별법에 근거를 둔 일반인 대상 공제는 실질은 보험이지만 보험업법 적용이 배제됨
 - 근거 법률별로 규제 내용 및 수준이 달라 공제계약자보호가 미흡할 수 있고, 차등적 규제 적용으로 공제업과 보험업 간의 공정 경쟁 저해가 우려되는 등 문제가 지적되곤 함
 - 상이한 감독체제로 인해 일률적으로 ‘금융상품’으로 포섭하여 규제하기 어렵다면, 공제 근거 법령에 금융소비자보호법상 판매규제를 준용하도록 하는 등의 방안도 고민해볼 필요가 있음
- 한편 보험회사가 취급하는 담보대출 등은 대출성상품으로 규제될 것으로 보임
 - 보험계약대출의 경우 법적 성격은 보험계약과 일체를 이루는 계약자의 권리로 해약환급금 등의 ‘선급금’에 해당하므로 보험계약과 별도의 대출성상품으로 규제함은 적절하지 않음
- ‘금융상품’의 범위를 정하는 일은 곧 법의 적용대상 및 규제의 한계를 설정하는 것임
 - 금융당국은 시행령 등 하위법령 제정 시 소비자보호를 위한 입법취지는 물론 감독의 효율성 및 규제적용 필요성 등을 두루 고려하여 합리적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1. 검토배경



- 내년 초 시행을 앞둔 금융소비자보호법(이하, '금소법')은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해 전 권역의 금융상품 판매행위를 체계적으로 규율하는 금융통합법률로서 제정됨
 - 규제공백·규제차의 문제를 해소하여 빈틈없이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현재 권역별로 달리 규제하고 있는 금융상품을 기능별로 재분류한 후 동일 유형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동일한 규제를 적용함
- 금소법의 적용은 기본적으로 '금융상품'의 개념을 중심으로, 금융상품의 판매 내지 자문을 업(業)으로 영위¹⁾하는 '금융상품판매업자' 및 '금융상품자문업자'를 수범자로 함
 - 따라서 금소법상 금융상품 해당성은 금소법 규제 적용의 1차 관문이라 할 수 있음
 - 금소법은 금융상품을 직접 정의하는 대신 권역별 법령에서 규정하는 금융상품(예금, 대출, 금융투자상품, 보험상품, 신용카드 등)을 열거하여 간접 정의한 후, 그와 유사한 상품 내지 서비스를 시행령으로 정하여 추가하는 방식을 취함(제2조제1호)
 - 나아가 이를 보장성, 투자성, 예금성, 대출성의 4유형으로 분류함(제3조)

〈표 1〉 금융소비자보호법의 금융상품 분류

구분	개념	대상
보장성	보험업법상 보험상품 및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보험상품 등
투자성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상품 및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펀드 등 금융투자상품, 신탁상품 등
예금성	은행법상 예금 및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예·적금 등
대출성	은행법상 대출 및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대출 및 신용카드 등

자료: 국회 정무위원회(2017. 9), 「금융소비자보호법안 등 검토보고서」, p. 33의 표를 토대로 작성함

- 현재 금융당국에서 마련 중인 금소법시행령에 어떠한 상품 내지 서비스가 금융상품으로 추가되느냐에 따라 금소법의 적용대상이 구체화될 것임
 - 본고에서는 보험업 관련 사항으로 (i) 보험상품과 동일한 규제를 받게 될 기타의 보장성상품과 관련하여 기존에 보험과 유사한 것으로 논의되어 왔던 상품 내지 서비스²⁾ 및 (ii) 보험회사가 취급하는 대출 등 대출성상품의 규제범위와 관련된 문제를 살펴보고자 함

1)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계속적 또는 반복적인 방법으로 하는 행위를 말함
 2) 채무면제·채무유예 상품, 유사보험 내지 공제, 보증연장서비스 등임

2. 보장성상품의 범위 관련



가. 채무면제·유예상품(Debt Cancellation and Debt Suspension)

■ 채무면제·유예상품이란, 대출을 취급하는 금융회사가 차입자로부터 소정의 수수료를 받고 사망, 장애 등 채무상환 장애사유 발생 시 채무를 면제하거나 유예해주시기로 하는 약정을 말함

- 국내에서 동 상품은 2005년경 일부 신용카드사가 취급하기 시작하여 2015년 말 기준 가입자가 332만여 명³⁾에 이를 정도로 한때 신용카드사의 대표적 부수업무로 성장한 바 있음⁴⁾
- 동 상품은 ① 위험보장을 목적으로, ② 우연한 사건 발생에 관하여, ③ 금전 및 그 밖의 급여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대가를 수수하는 계약⁵⁾이라는 보험상품의 개념적 요소를 갖추고 있음
 - 그럼에도 보험회사가 아닌 카드회사가 동 상품을 취급하게 되면서 논란이 발생함
- 보험상품성을 부정하는 측은 금융회사가 부담하는 위험은 대출 업무에 내재된 것과 같은 것으로 제3자(즉, 보험회사)로의 독자적 위험 이전이 없는 일종의 자기보험적 상품(비보험)으로 파악함
 - 반면, 보험상품성을 강조하는 입장은 개념정의 외에도 보험업 규제를 받지 않으므로 하여 발생하는 상품, 가격적 보호장치, 설명의무 등 판매행위 규제 미비 등을 정책적 논거로 함
- 도입 초기 금융당국은 이를 보험상품으로 보았던 것으로 보이며, 2008년 보증보험의 일종으로 이를 명시 하되 신용카드사 등의 예외적 취급을 허용하는 보험업법 개정을 추진하기도 함
 - 결과적으로 이러한 개정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현재는 채무면제·유예상품은 여신전문금융회사의 부수업무로 광고규제 및 설명의무 등 일부 행위규제를 받고 있음

■ 보험상품성 여부를 떠나 동 상품이 금융회사가 취급하는 ‘보험상품과 유사한 것’임은 부정할 수 없음

- 금소법상 ‘금융상품’에 포함해 보험상품과 동등한 판매규제를 적용하면 보험회사가 아닌 카드사가 상품을 취급하는 규제현실을 존중하면서도 소비자보호 수단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임

3) KBS NEWS(2017. 3. 4), “카드사 채무면제·유예상품 안내 강화 뒤 가입자↓”, <http://news.kbs.co.kr/news/view.do?ncd=3439289&ref=A>

4) 그러나 성장할수록 민원이 증가하고 불완전판매 문제가 불거졌고, 2016년경 금융감독원이 감독강화조치를 취하면서 현재는 많은 카드사가 신규판매를 중단한 상태임

5) 보험업법 제2조제1호를 참조함

나. 공제

- 공제란 일정한 단체에 속한 구성원들 사이에 불확정한 사고에 대비한 상호부조를 말하나, 이 중에는 구성원들 이외에 불특정 다수인도 대상으로 삼는 경우(신탁, 수협, 새마을금고 등)가 있음⁶⁾
 - 개념적으로 보험에 해당⁷⁾하지만 별도 근거 법률에 의거하여 규율되므로 보험업법의 적용이 배제됨
 - 공제에 적용되는 규제의 수준과 내용이 근거 법률에 따라 서로 다르고, 소관 행정기관도 수협공제는 해양수산부, 새마을금고공제는 행정안전부 등으로 다양함
 - 이로 인해 공제업 건전경영 또는 공제계약자 등의 권익보호가 미흡할 수 있고, 차등적 규제 적용으로 공제와 보험업 간의 공정 경쟁 저해가 우려되는 등이 문제로 지적됨
 - 동일 기능, 동일 규제라는 금소법의 입법 취지를 고려하면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공제 등 유사금융상품에 관해서도 금소법상의 판매행위 규제를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 다만, 이러한 유사금융의 경우는 대부분 금융감독당국의 감독·검사 대상이 아니어서 통일적 규제가 어렵다는 문제가 있음⁸⁾
 - 근거 법률과 소관 행정기관이 다양한 공제를 일률적으로 금소법의 금융상품으로 포섭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임
 - 대안으로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주요 공제의 근거 법령에 금소법상 판매규제 등 최소한의 준수사항을 입법화하거나 준용토록 하는 방안을 제시하는 견해⁹⁾를 경청할 필요가 있음

다. 보증연장서비스(Extended Warranty)

- 보증연장서비스란 제품의 제조사 또는 판매사가 제공하는 수리, 교환 등 무상보증기간이 종료된 후 일정한 대가를 받고 일정 기간 제품 고장·하자에 따른 수리 등 서비스를 계속 제공하는 것을 말함¹⁰⁾
 - 보증연장서비스 역시 보험상품의 일반적 정의, 즉, 위험보장성, 피보험이익, 우연성의 요소를 갖추고 있으나 보험업법상 명시된 바가 없어 보험상품 여부에 대한 논란이 존재함
 - 금융감독당국은 제조사나 판매사가 아닌 제3자가 판매하는 경우에는 보험상품에 해당될 수 있다는

6) 한기정(2019), 『보험업법』, 박영사, p. 32

7) 통설과 판례는 공제의 법적 성격이 보험업법상 상호보험과 유사하다고 보고 있음

8) 국회 정무위원회(2012. 9),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 검토보고서」, pp. 14~15

9) 위 검토보고서, p. 15; 노태석(2013),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 상의 판매행위 규제에 관한 검토」, 『소비자문제연구』, 제44권, p. 120

10) 국내에서는 BMW 코리아의 워런티 플러스, Apple사의 AppleCare 플랜 등 주로 자동차 및 전자제품 관련하여 제공되며, 보험상품으로 제공되는 사례로는 롯데손해보험이 판매하는 제품보증연장보험이 유일함; 백영화·박정희(2018), 『보증연장 서비스 규제 방안: 보험 규제 적용 여부를 중심으로』, 보험연구원, pp. 23~24

입장인 것으로 파악됨¹¹⁾

- 그러나 제품의 하자 등을 보장하는 보증연장서비스를 보험상품으로 보아야 하는지, 판매 주체에 따라 보험상품성을 달리 보는 것이 적절한지 여부 등에 관해 여전히 불명확성이 존재함
- 보증연장서비스의 보험상품성에 대한 논의의 기저에는 비금융회사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소비자보호를 위한 재무건전성 확보 및 판매행위 규제 등 미비에 대한 우려가 존재함
 - 이러한 측면에서 보증기간연장서비스를 보험상품에서 적용 제외하는 경우에는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규정을 법제화할 필요성이 제기됨¹²⁾
- 보험상품과의 유사성이나 소비자보호 필요성에 착안하면 이를 '금융상품'으로 규율하여야 한다는 견해도 있을 수 있음
 - 그러나, 비금융회사에 대한 동 서비스 허용 여부에 관한 공론화도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현 상황에서 이러한 논의는 이른 감이 있음
 - 향후 해당 서비스의 법제화 논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경우 판매행위 규제 방법으로서 금소법의 일부 조항을 참고하거나 준용하는 등의 방안이 고려될 수 있을 것임

3. 대출성상품의 범위 관련



가. 대출성상품의 정의

- 동일 기능·동일 규제라는 금소법의 입법 취지상 보험회사가 취급하는 대출 등에 대해서도 금소법상 대출성상품 규제가 적용될 것으로 이해됨
- 금소법상 대출성상품이란 '은행법 및 상호저축은행법상 대출,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신용카드·시설대여·연불판매·할부금융 및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상품을 말함
 - 은행법 및 상호저축은행법에서 대출에 대한 일반적 정의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대출에 대한 정의는 일반적 해석론에 의하는 바, 대출은 (i) 대출기관의 대출자에 대한 금전 등의 공여, (ii) 공여된 금전의 사용수익에 대한 대출자의 대가지급을 개념요소로 함¹³⁾
 - 따라서 금소법상 대출성상품은 금융회사로부터 금전 등을 공여받고 사용대가로 원금 및 이자에 상당하는 금전 등을 지불하는 금융상품¹⁴⁾으로 볼 수 있음

11) 위 문헌, p. 11

12) 위 문헌, p. 63; 안재홍·양승현(2011), 「개정 보험업법상 보험상품의 정의에 관련된 이슈 검토」, 『BFL』, 제48호, p. 16

13) 노태석(2013),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 상의 판매행위 규제에 관한 검토」, 『소비자문제연구』, 제44권, p. 109

14) 상동

- 위 정의에 의하면 보험회사가 취급하는 담보대출, 신용대출 등은 대출성상품에 해당될 것임
 - 반면, 보험계약대출의 경우는 일용 대출의 개념적 요소는 갖고 있더라도 법적 성격이 '선급금'이어서 대출성상품 규제 여부가 문제됨

나. 보험계약대출의 대출성상품 규제 적절성 여부

■ 보험계약대출¹⁵⁾은 '대출'이라는 명칭에도 불구하고 법적 성격은 보험계약과 일체를 이루는 하나의 계약으로 보험약관상 의무이행으로 행해지는 장래 보험금 내지 해약환급금의 선지급¹⁶⁾임

- 생명보험표준약관, 장기손해보험표준약관 등은 보험계약자의 권리로서 해약환급금의 범위 내에서 보험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함
 - 계약자가 보험계약상 권리로 ① 복잡한 절차 없이 ② 주로 단기자금 활용 목적으로 ③ 자신에게 권리가 있는 해지환급금등을 ④ 수시로 선급 및 상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소비자효용이 있음
- 이러한 특성상 보험계약대출은 금소법상 대출성상품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견해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출의 개념정의에 해당하는 이상 대출성상품으로 보아야 한다는 반대 견해가 있을 수 있음

■ 보험계약대출은 보험계약과 일체를 이루기 때문에 이를 대출성상품으로 보는 경우 보험계약이 보장성상품이자 대출성상품에 해당¹⁷⁾하게 되어 적합성원칙 등 주요 규제 관련 해석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계약체결을 권유'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적합성원칙(제17조제2항)¹⁸⁾은, 보장성상품(보험상품)에 대해서는 시행령에 정하는 상품에 한해 적용되나 대출성상품에 관해서는 예외 없이 적용됨
 - '계약체결'을 보험계약 체결시점으로 보게 되면 보험계약 자체에는 적합성원칙 적용이 없더라도 보험계약대출로 인해 모집 시 언제나 소비자의 재산상황 등을 물어야 하는 불합리가 발생함
- '계약체결'을 대출 신청 시로 보면 금융회사의 '권유'가 없으므로 '적합성 원칙'이 아니라 '적정성 원칙'(제19조)¹⁹⁾이 적용되며, 소비자의 요청이 없는 한 '설명 의무'(제20조)는 적용되지 않음
 - 이 경우 대출신청 시마다 보험회사가 해약환급금으로 담보된 부분에 대해 계약자의 재산 상황, 변제 계획 등을 문의하고 서명 등 방법으로 확인을 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발생할 수 있음
 - 나아가 오히려 소비자의 대출 여부 판단에 중요한 금리 등에 관한 설명의무는 적용되지 않음

15) 생명보험표준약관은 보험계약대출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나 통상 보험약관대출이라는 용어도 통용됨

16) 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5다15598 판결을 참조함

17) 금소법 제3조(금융상품의 유형)는 개별 금융상품이 둘 이상에 해당하는 속성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상품유형에 각각 속하는 것으로 간주함

18) 금융소비자의 재산상황 등에 비추어 부적합한 상품의 계약체결 권유를 금지함(금소법 제17조제2항)

19) 금융소비자가 자발적으로 구매하려는 상품이 소비자의 재산상황 등에 비추어 적정하지 않을 경우 고지·확인 의무 부여함(동법 제18조)

- 불공정영업행위 금지(제20조),²⁰⁾ 부당권유행위 금지(제21조),²¹⁾ 광고 규제(제22조)는 보험계약상 계약자의 권리로서 별도의 권유가 이루어지지 않는 보험계약대출의 특성상 문제될 여지가 극히 적음
 - 불공정영업행위 금지는 대출기관이 대출을 빌미로 부당한 요구를 하지 못하게 금지하는 것인데, 보험계약대출은 계약자의 약관상 권리로 이러한 상황을 상상하기 어려움
 - 부당권유행위 금지는 금융상품을 ‘권유’할 때 소비자의 오판을 야기할 수 있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이나 보험계약과 일체로 이루어지는 보험계약대출에 대해서는 별도의 ‘권유’가 없음
 - 마찬가지로 보험계약과 일체를 이루는 보험계약대출을 별도로 광고하는 경우도 상정하기 어려움
- 끝으로 청약철회권(제46조) 및 위법계약해지권(제47조)²²⁾도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언제든지 상환이 가능한 보험계약대출의 특성상 적용실익이 없음
 - 이상을 종합하면 보험계약대출은 금소법 제2조제1호의 ‘금융상품’ 범위에서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개별 규정에서 적절히 적용을 제외할 필요가 있음

4. 결어



- 금융소비자 보호 관련 권역별 규제체계를 통합규제체계로 전환하는 금소법에서 ‘금융상품’의 범위를 정하는 일은 곧 동법의 적용대상 및 규제의 한계를 설정하는 것임
 - 입법 취지를 고려하면 가능한 폭 넓은 적용이 바람직하겠으나, 소비자보호를 위한 감독의 효율성 및 판매 규제 적용 필요성 등을 고려할 때 상품 내지 서비스 별로 구체적 타당성을 기할 필요가 있음
 - 금소법은 시행령에 금융상품에 포함할 사항을 위임하고 있는바, 금융당국은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합리적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kiri**

20) 대출과 결부된 다른 상품계약 강요, 부당한 담보요구, 부당한 편익 요구 등을 금지함

21) 금융상품의 가치 등에 관한 단정적 판단 또는 허위사실 제공 등을 금지함

22) 광고규제를 제외한 5대 판매행위 규제 위반 시 일정기간 내에 소비자에게 계약 해지 요구권이 부여됨